

**투자위험등급:**  
**1 등급**  
**[매우높은위험]**

하나 UBS 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 UBS Step Up 배당 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 [주식혼합]**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UBS Step Up 배당 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 [주식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나 UBS Step Up 배당 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 [주식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나 UBS 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판매회사 영업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http://www.ubs-hana.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09년 11월 23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한 날 : **2009년 11월 26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2009년 9월 18일 ~ 2009년 11월 17일(예정)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http://kofia.or.kr)  
서면문서 : 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고
-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 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제 1 부.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2. 모집예정기간
3. 모집예정금액
4. 펀드존속기간
5. 분류
6. 집합투자업자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목적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 (1) 연평균 수익률
  - (2) 연도별 수익률

제 3 부. 매입 환매 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 환매 절차
  - (1) 기준가격 산정
  - (2) 매입 및 환매 절차
4. 전환절차 및 방법

제 4 부. 요약 재무정보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이 투자신탁은 최초설정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주식에의 투자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며, 최초설정일 이후 6 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주식모투자신탁에 전부 투자하게 되므로 다른 주식형 투자신탁과 유사한 수익/위험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시점까지는 정기적으로 주식편입비율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9. 이 투자설명서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요약한 것에 불과하여 정식 투자설명서의 표현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

##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펀드코드
하나 UBS Step Up 배당 증권자투자신탁(제 1 호)[주식혼합]	16117
A	16118
C1	16119
C2	16120
C3	16121
C4	16122
C-E	16123

### 2. 모집예정기간 : 2009년 9월 18일 ~ 2009년 11월 17일(예정)

최초설정일부터 2개월간에 한하여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 3. 모집예정금액 : 1 조좌

이 투자신탁은 1 조좌까지 모집(판매)이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판매)합니다.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위형 집합투자기구로 최초설정 후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2개월간에 한하여 모집예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모집(판매) 예정금액 및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예정보다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4.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 5. 분류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주식형) 단,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4개월이후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단위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불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해당사항 없음

-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 6.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하나 UBS 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 빌딩 (02-3771-7800)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1. 집합투자기구의 주요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하나 UBS 태극 배당 증권모 투자신탁[주식]	90%이하 (단, 투자신탁의 최초설 정일로부터 4 개월이후 60% 이상)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 등 국내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투자하는 주식모투자신탁
하나 UBS 단기 증권모투자신탁(제 1 호)[채권혼합]	50%미만 (단, 투자신탁의 최초설 정일로부터 4 개월이후 40% 미만)	어음에 투자신탁재산의 90%이하를 투자하는 채권혼 합모투자신탁
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10%이하	-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 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

※ 기타 다른 투자대상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 등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펀드설정 이후 1 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배당증권모신탁[주식] 및 단기증권모신탁[채권혼합]에 각각 50% 정도를 투자 한 후 그 이후 매월 사전에 정해진 시점에 일정비율 만큼 배당증권모신탁[주식]의 편입비를 늘리고 단기증권모신탁[채권혼합]의 편입비를 줄여가는 펀드 내 자동 주식분할매수전략을 수행함으로 중장기적인 주식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모투자신탁	투자목적
하나 UBS 태극배당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 등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벤치마크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을 추구
하나 UBS 단기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국내 어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4 개월까지

투자대상	투자전략	투자비율
하나UBS 태극배당 증권모투자신탁[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용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군들중 실적개선 및 저평가된 주식에 집중 투자</li> </ul> </li> <li>■ 자산운용의 기본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ottom-up Approach 에 의한 종목발굴 : field survey 및 기업실적 점검</li> <li>- 정기적인 기업방문과 분석으로 실적, 배당정책을 면밀히 체크</li> <li>- 주가, 실적, 배당정책 변동으로 배당수익률 변화시 이익실현 및 리스크 관리</li> </ul> </li> </ul>	90% 이하
하나UBS 단기증권모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운용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펀드 듀레이션 : 0.2년 ± 0.5년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li> <li>- 시장상황에 따라 국공채, 은행채 및 어음 등 자산을 편입하여 유동성 확보 관리</li> <li>- 유동자산 편입비는 5% 수준에서 정기예금 등 유동자산 활용 Idle 자산 최소화</li> </ul> </li> <li>■ 자산 구성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행기업 신용위험 관리를 통해 펀드 운용수익률 제고에 기여</li> <li>- Credit 섹터와 저평가 자산 발굴을 통한 펀드 YTM (만기수익률) 제고 주가, 실적, 배당정책 변동으로 배당수익률 변화시 이익실현 및 리스크 관리</li> </ul> </li> </ul>	50% 미만

나.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4 개월이후

투자대상	투자전략	투자비율
하나UBS 태극 배당 증권모투 자신탁[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용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군들중 실적개선 및 저평가된 주식에 집중 투자</li> </ul> </li> <li>■ 자산운용의 기본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ottom-up Approach 에 의한 종목발굴 : field survey 및 기업실적 점검</li> <li>- 정기적인 기업방문과 분석으로 실적, 배당정책을 면밀히 체크</li> <li>- 주가, 실적, 배당정책 변동으로 배당수익률 변화시 이익실현 및 리스크 관리</li> </ul> </li> </ul>	60% 이상
하나UBS 단기 증권모투자신탁 (제1호)[채권혼 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운용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펀드 듀레이션 : 0.2년 ± 0.5년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li> <li>- 시장상황에 따라 국공채, 은행채 및 어음 등 자산을 편입하여 유동성 확보 관리</li> <li>- 유동자산 편입비는 5% 수준에서 정기예금 등 유동자산 활용 Idle 자산 최소화</li> </ul> </li> <li>■ 자산 구성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행기업 신용위험 관리를 통해 펀드 운용수익률 제고에 기여</li> <li>- Credit 섹터와 저평가 자산 발굴을 통한 펀드 YTM (만기수익률) 제고 주가, 실적, 배당정책 변동으로 배당수익률 변화시 이익실현 및 리스크 관리</li> </ul> </li> </ul>	40% 미만

※ 이 투자신탁은 주식모투자신탁 분할매수전략에 따라 투자비율은 매월 변동 됩니다.

■ 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자산총액의 10%이하

■ 펀드내 자동자산 배분 전략

구분	투자기간	추가 주식모투자	투자 비율(예시)
Step 1	펀드 설정이후 1개월이 되는 시점	-	배당주식모신탁 50% 수준, 채권혼합모신탁 50% 수준
Step 2	펀드 설정이후 2개월이 되는 시점	최초설정액의 10%	배당주식모신탁 60% 수준, 채권혼합모신탁 40% 수준
Step 3	펀드 설정이후 3개월이 되는 시점	최초설정액의 10%	배당주식모신탁 70% 수준, 채권혼합모신탁 30% 수준
Step 4	펀드 설정이후 4개월이 되는 시점	최초설정액의 10%	배당주식모신탁 80% 수준, 채권혼합모신탁 20% 수준
Step 5	펀드 설정이후 5개월이 되는 시점	최초설정액의 10%	배당주식모신탁 90% 수준, 채권혼합모신탁 10%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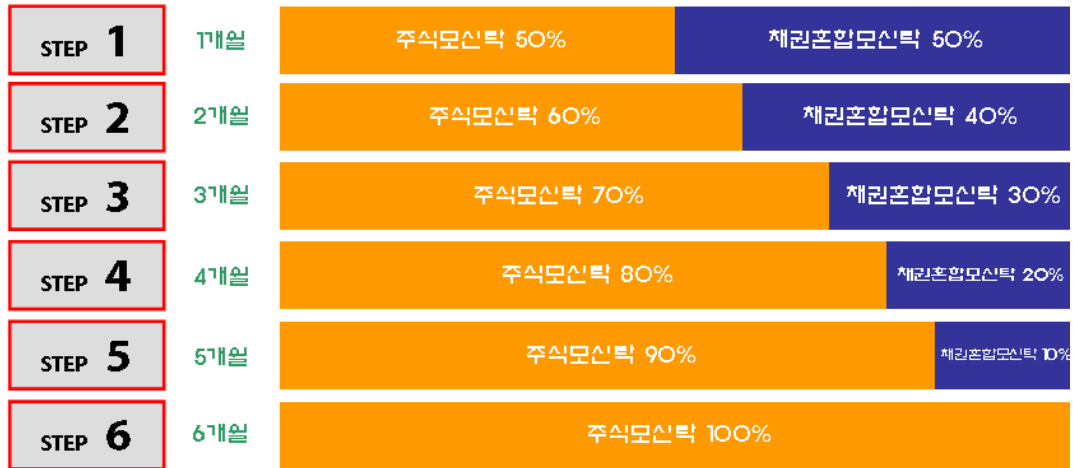
Step 6	펀드 설정이후 6개월이 되는 시점	최초설정액의 10%	배당주식모신탁 100% 수준
--------	-----------------------	---------------	-----------------

\*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은 펀드설정 이후 1 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배당증권모신탁[주식] 및 단기증권모신탁[채권혼합]에 각각 50% 정도를 투자 한 후 그 이후 매월 사전에 정해진 시점에 주식모투자신탁의 편입비율을 최초설정액 대비 매월 10%씩 높여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설정일 이후 주식시장의 등락에 따라 실질적인 주식모신탁 및 채권혼합모신탁의 투자비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 표에서의 투자비율은 주식모신탁 및 채권혼합모신탁의 가격변동이 없다는 것을 가정한 예시 목적입니다. 수준이라 함은 ± 10%를 말합니다.

\* 편입비율 조절하는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해당일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편입비율을 조절하게 됩니다.

\* 이 자투자신탁의 출시 배경은 최근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라 가격 부담으로 인하여 시장이 조정 받기를 기다리는 고객들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시장의 움직임은 예측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분할매수를 통한 투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시장환경과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하여, 마켓 타이밍을 배제하고 펀드내 자동분할매수를 통하여 자동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식시장의 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하락이나 조정을 기다리다 투자시점을 놓치는 위험 또는 주식시장의 고점에서 일시에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거치식 투자에 따른 고유한 위험)을 줄이는 것을 운용전략으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 자투자신탁은 주식모투자신탁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분할하여 매수하는 자동자산배분전략으로 운용합니다.





(2) 비교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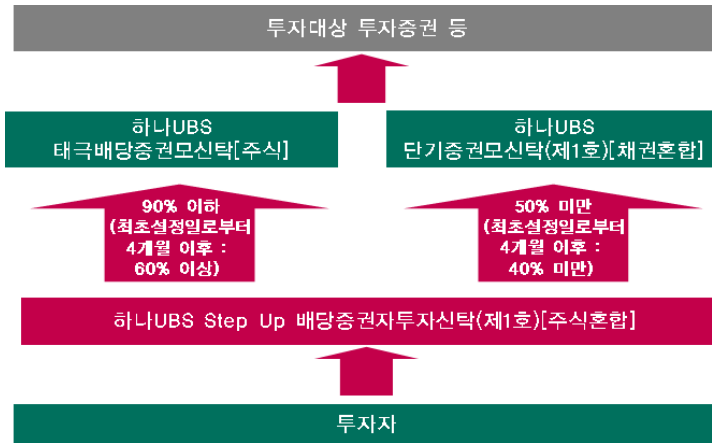
구분	투자기간	비교지수
Step 1	펀드 설정일부터 2개월까지	$KODI * 50\% + (CD*50\% + Call*50\%) * 50\%$
Step 2	펀드 설정 2개월 경과후 부터 3개월까지	$KODI * 60\% + (CD*50\% + Call*50\%) * 40\%$
Step 3	펀드 설정 3개월 경과후 부터4개월까지	$KODI * 70\% + (CD*50\% + Call*50\%) * 30\%$
Step 4	펀드 설정 4개월 경과후 부터5개월까지	$KODI * 80\% + (CD*50\% + Call*50\%) * 20\%$
Step 5	펀드 설정 5개월 경과후 부터6개월까지	$KODI * 90\% + (CD*50\% + Call*50\%) * 10\%$
Step 6	펀드 설정 6개월 경과후	$KODI * 100\%$

(3)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 3.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배당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위험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 일반위험 : 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특수위험 : 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기타 투자위험 등 :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 의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집합투자재산을 상장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어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투자적격등급이상의 채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발행사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채무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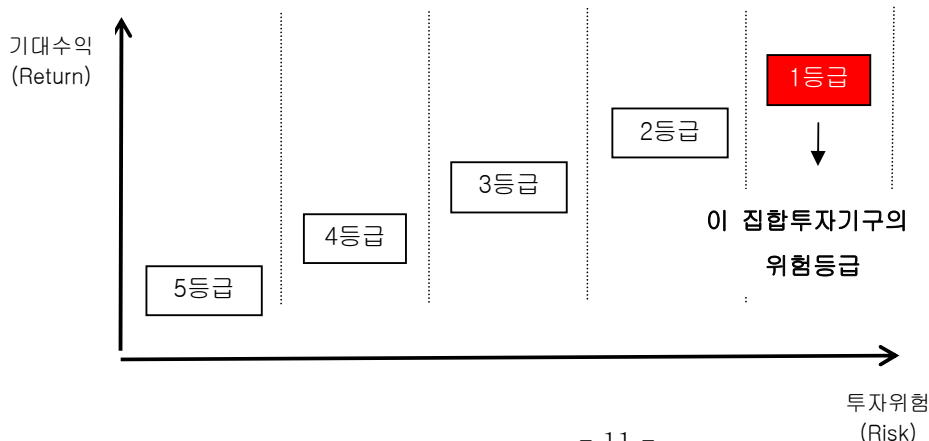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투자전략 위험	이 투자신탁의 유형은 최초설정일로부터 4 개월까지는 혼합주식형으로 구분되며, 그 이후에는 주식형으로 구분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식모투자신탁의 편입비를 사전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투자전략을 수행하므로 주식모투자신탁의 편입비는 최대 100%까지 투자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혼합주식형의 투자위험이 아닌 주식형 상품과 동일한 투자위험이 존

	<p>재하며, 분할매수시점 마다 급격한 주가가격의 상승 또는 투자전략을 수행한 후 급격한 주가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폭은 커질 수 있습니다.</p> <p>이 투자신탁은 최초설정액을 기준으로 사전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 채권혼합모신탁을 환매하고 그 자금으로 주식모신탁의 편입비율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등락에 따라 실질적인 주식모신탁에의 투자비율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즉, 주식시장이 상승할 경우에는 편입한 주식의 평가액 상승에 따라 최초 목표로 한 투자비율보다 높게 주식에 투자하게 되며, 반대로 주식시장이 하락할 경우에는 주식의 평가액 하락에 따라 최초 목표로 한 투자비율보다 낮게 주식에 투자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p>
<b>유동성 위험</b>	<p>유가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현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b>모자형 구조 위험</b>	<p>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주식 또는 채무증권 등에 투자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 또는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 조절은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및 환매를 통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 또는 채무증권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달리,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에 필요한 기간으로 인하여 투자비중 조절을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되는 당일에는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에 필요한 기간으로 인하여 모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p>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에 투자하는 배당주식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며 배당주식모신탁의 편입비를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집합투자기구조로 최종적으로는 위험자산인 주식모투자신탁에 100%까지 투자하게 되므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거나, 위험자산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이상입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및 펀드예시주]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30% 이상인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li> <li>분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분산요건을 충족하되,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2등급	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li> <li>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0%이상 -30% 미만인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li> <li>분산요건을 충족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담보있는 대출 또는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부동산 등 집합투자기구</li> <li>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3등급	중간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자산에 최대 50% 미만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li> <li>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이상 -10% 미만인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li> <li>담보있는 대출 또는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등 집합투자기구</li> <li>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4등급	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며, 투자적격등급(BBB- 이상) 채권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원금보존을 추구하는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li> <li>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차익거래 집합투자기구</li> <li>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5등급	매우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li> <li>국공채 전용 집합투자기구</li> <li>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li> </ul>

주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UBS자산운용(주)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모자형펀드의 경우, 모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각 자펀드의 모펀드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펀드의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6. 책임운용전문인력(2009.11.26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정준하	1970	부부장	47 개	10,638 억	- 홍익대 경제학과 - 주식운용 6년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7. 투자실적추이 (세전기준)

: 신규펀드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 1. 수수료 및 보수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C1, C2, C3, C4 C-E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7% 이내 <sup>(주)</sup>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환매수수료	- 30 일미만 : 이익금의 70% - 30 일 이상 90 일미만 : 이익금의 30%	- 90 일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주)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가 납입금액의 0.7%이내에서 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투자기간	구분	지급비율(연간, %)		
		종류 A	종류 C1	종류 C-E
최초설정일 부터 1 개월 까지	집합투자업자보수	0.318%	0.318%	0.318%
	판매회사보수	-	0.573%	0.458%
	신탁업자보수	0.020%	0.020%	0.02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8%	0.018%	0.018%
	기타비용 <sup>주1)</sup>	실비	실비	실비
	총보수 비용	0.356%	0.929%	0.814%
	증권 거래 비용 <sup>주2)</sup>	실비	실비	실비
최초설정일 부터 1 개월 경과 후 2 개월 까지	집합투자업자보수	0.354%	0.354%	0.354%
	판매회사보수	-	0.637%	0.510%
	신탁업자보수	0.020%	0.020%	0.02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8%	0.018%	0.018%
	기타비용 <sup>주1)</sup>	실비	실비	실비
	총보수 비용	0.392%	1.029%	0.902%
	증권 거래 비용 <sup>주2)</sup>	실비	실비	실비
최초설정일 부터 2 개월 경과 후 3 개월 까지	집합투자업자보수	0.393%	0.393%	0.393%
	판매회사보수	-	0.708%	0.566%
	신탁업자보수	0.020%	0.020%	0.02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8%	0.018%	0.018%
	기타비용 <sup>주1)</sup>	실비	실비	실비
	총보수 비용	0.431%	1.139%	0.997%
	증권 거래 비용 <sup>주2)</sup>	실비	실비	실비
최초설정일 부터 3 개월 경과 후 4 개월 까지	집합투자업자보수	0.437%	0.437%	0.437%
	판매회사보수	0.087%	0.787%	0.629%
	신탁업자보수	0.020%	0.020%	0.02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8%	0.018%	0.018%
	기타비용 <sup>주1)</sup>	실비	실비	실비
	총보수 비용	0.562%	1.262%	1.104%
	증권 거래 비용 <sup>주2)</sup>	실비	실비	실비
최초설정일 부터 4 개월 경과 후 5 개월 까지	집합투자업자보수	0.486%	0.486%	0.486%
	판매회사보수	0.174%	0.874%	0.699%
	신탁업자보수	0.020%	0.020%	0.02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8%	0.018%	0.018%
	기타비용 <sup>주1)</sup>	실비	실비	실비
	총보수 비용	0.698%	1.398%	1.223%
	증권 거래 비용 <sup>주2)</sup>	실비	실비	실비
최초설정일 부터 5 개월 경과 후 6 개월 까지	집합투자업자보수	0.540%	0.540%	0.540%
	판매회사보수	0.272%	0.972%	0.777%
	신탁업자보수	0.020%	0.020%	0.02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8%	0.018%	0.018%
	기타비용 <sup>주1)</sup>	실비	실비	실비
	총보수 비용	0.850%	1.550%	1.355%

	증권 거래 비용 <sup>주2)</sup>	실비	실비	실비
--	-------------------------	----	----	----

※ 최초설정일부터 6개월 경과 후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E	
집합투자업자보수	0.71%	0.71%	0.71%	0.71%	0.71%	0.71%	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83%	1.53%	1.377%	1.239%	1.115%	1.224%	
신탁업자보수	0.03%	0.03%	0.03%	0.03%	0.03%	0.03%	
일반사무관리보수	0.018%	0.018%	0.018%	0.018%	0.018%	0.018%	
기타비용 <sup>주1)</sup>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사유발생시
보수 합계	1.588%	2.288%	2.135%	1.997%	1.873%	1.982%	
증권거래비용 <sup>주2)</sup>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 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A	180,903	531,219	917,443	2,065,188
종류 C1	181,143	636,536	1,092,075	2,445,808
종류 C-E	157,459	594,693	1,076,743	2,509,257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종류 C1의 보수는 매 1년 경과시마다 자동으로 종류 C2, C3, C4로 전환된 것을 전제로 계산된 보수 비용입니다.

주 3) 종류 A 수익증권과 종류 C1 수익증권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이 되는 시점이 나 추가납입, 보수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과세

###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1.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할 것
2. 수익자 수가 30인을 초과할 것
3. 30인(수익자가 1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체 수익자 수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수) 이하의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단, 모자형투자신탁에 대하여는 모든 자투자신탁의 수익자를 모투자신탁의 수익자로 봄.

###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가 얻은 모든 수익은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①상장주식,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 ②(거주자인 개인에 한하여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위한 일반기준가와, 과세 목적을 위한 과표기준가를 계산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 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및 최고한도세율은 관련 세법 등의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경우 공모투자신탁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 가.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p>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 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p> <p>※ 모자형투자신탁에서는 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신탁재산을 모투자신탁에서 통합하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p>[서류공시] 판매회사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p> <p>[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a href="http://www.ubs-hana.com">www.ubs-hana.com</a>)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p>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 나. 매입 및 환매절차

##### (1)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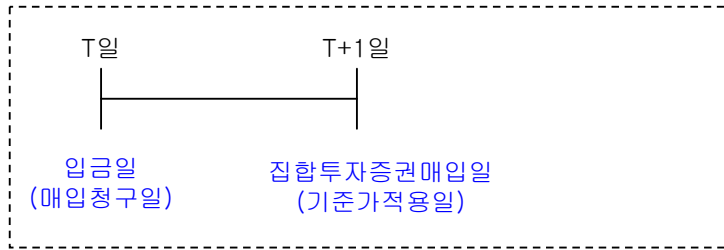
#####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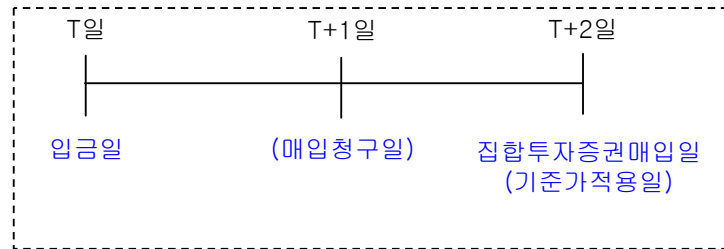
#####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오후 3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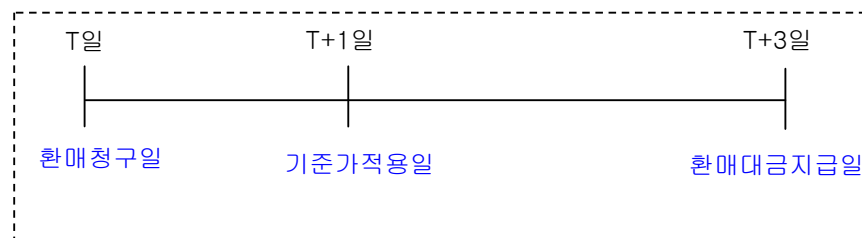
(2)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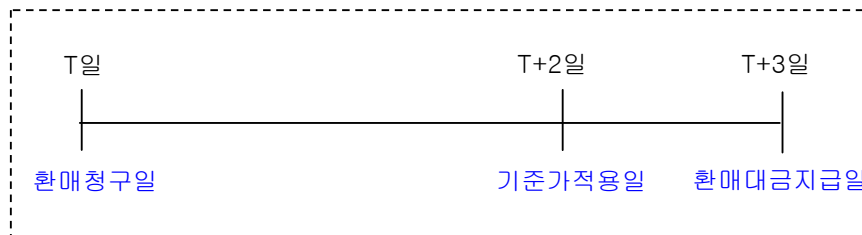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 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오후 3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4.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습니다.

#### IV. 요약 재무정보

: 신규편드로 해당사항 없습니다